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1)]

I. 사건개요

이 사건은 스페인의 한 슈퍼마켓 점원들이었던 5명의 청구인들이 고용주가 설치한 CCTV를 통해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후, 숨겨진 CCTV에 의한 감시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인권협약') 제8조[2)]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의 사용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3)]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이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5명의 청구인들은 사건 당시 모두 스페인의 한 슈퍼마켓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2009년 3월부터 슈퍼마켓 매니저는 재고와 판매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2월에는 7,780유로, 3월에는 17,971유로, 4월에는 13,936유로, 5월에는 18,009유로, 6월에는 24,614유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009년 6월 15일,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밝히기 위해 매니저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 카메라 중 일부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고 일부는 숨겨져 있었다. 숨겨진 카메라는 계산대를 향해 있었다. 슈퍼마켓 점원들은 보이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절도의 우려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고 고지를 받았지만, 숨겨진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지 받지 못하였다.

2009년 6월 25일, 매니저는 노조 대표에게 숨겨진 카메라에 찍힌 장면들을 통해 점원들의 절도가 밝혀졌다고 알렸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14명의 점

---

1) CASE OF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Applications nos. 1874/13 and 8567/13, 17 October 2019.

2)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에 필요하여 법률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3) 유럽인권협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적정시일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원들이 해고되었다. 청구인들 중 세 명은 슈퍼마켓 측의 법률대리인과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들이 절도를 인정하고 고용계약을 종료하려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르고, 슈퍼마켓 측은 이들을 형사고소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였다.

2009년 7월 22일, 청구인들은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그들은 비밀카메라 감시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그러한 수단으로 얻어진 녹화본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용심판원은 합의서에 서명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 합의서에 서명한 청구인들도 제소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 외에는 고용심판원과 유사하게 -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허가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위반의 부존재를 이유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제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8년 1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 소재판부(Chamber)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제6조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스페인 정부가 항소하여 대재판부(Grand Chamber)로의 회부를 요청하였고(유럽인권협약 제43조[4]),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은 대재판부로 회부되었다.[5]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 대재판부는 소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뒤집어 유

4) 유럽인권협약 제43조 (대재판부로의 회부)
1.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대재판부의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패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재판부는 판결로써 이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

5)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대부분은 소재판부의 단심으로 마무리되며, 대재판부로의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재판부는 1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럽인권협약 제8조 및 제6조의 위반이 모두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I. 판결요지

법정의견

1. 본안 전 판단

본안 전 판단에 있어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의 청구인 중 한 명이 소송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소송의 계속을 원하고, 심리의 계속에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망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스페인 정부가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재판부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던 제8조에 관해서만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6]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고용주의 해고 결정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 내 비디오 감시라는 수단으로 얻어진 녹화물에 근거한 것이고, 스페인 국내법원은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유럽인권재판소 소재판부 판결 내용

6) '예비적 이의'라고도 하며, 당사자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항변이다.

2018년 1월 9일에 선고된 소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비디오 감시 조치가 사인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7] 측면에서 살펴보고, 국가당국이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고용주의 '재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리' 사이에 공정한 형량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재판부는 이 사건 비디오 감시가 절도에 대한 정당한 의혹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고 - 시간적 제한도 없었고, 계산대에서 일하는 모든 점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근무시간 전체를 포함시켰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감시의 존재, 목적, 실행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할 국내법상 사전고지의무[8]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재판부는 고용주가 비디오 감시장치의 설치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고지했어도 고용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소재판부는 국내법원들이 공정한 법익형량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2)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판단

1) 피항소국가의 적극적인 의무

이 사건의 비디오 감시는 사기업인 고용주가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당국에 의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 침해로 분석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국내법원들이 비디오 감시를 근거로 해고를 확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7) 인권법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는 국가가 기본권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활동할 의무를 의미하며, 단순히 인권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기존의 소극적인 의무(negative obligation)와는 대비된다.

8) 스페인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고지받을 권리)
1.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정보 주체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확하고 명백하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받아야 한다.
(a) 개인정보파일의 존재 또는 정보가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 그 목적, 그리고 그 정보의 수신자;
(b)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의 의무적인 또는 선택적인 속성;
(c)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데 따른 결과;
(d) 접근, 수정, 삭제, 반대에 대한 권리의 존재;
(e) 관리자 또는 적절한 경우 그의 대리인의 신분과 주소
(후략)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기본적으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공공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지만, 단지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극적인 주된 임무에 더해,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로 인해 사인 간의 영역에서도 사생활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게 된다.[9)]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사 선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10)]

사인 간의 영역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협약국의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에 속한다. 사생활 존중을 보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국가의 의무의 성격은 문제가 된 사생활의 측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부과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틀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1)] 심각한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형법 규정의 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덜 심각한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량에 맡기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피고용인을 감시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비디오 감시나[12)] 업무 외 서신교환 내지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13)]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를 국가의 재량으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고용주의 감시조치가 비례적이어야 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4)]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선례들에서 피고용인에 대한 감시가 유럽인권협

9) Söderman v. Sweden [GC], no. 5786/08, § 78, ECHR 2013;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nos. 40660/08 and 60641/08, § 98, ECHR 2012.
10) Bărbulescu v. Romania [GC], no. 61496/08, § 110, 5 September 2017; Köpke v. Germany (dec.), no. 420/07, 5 October 2010; De La Flor Cabrera v. Spain, no. 10764/09, § 32, 27 May 2014.
11)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X and Y v. the Netherlands, 26 March 1985, §§ 23, 24 and 27, Series A no. 91; M.C. v. Bulgaria, no. 39272/98, § 150, ECHR 2003-XII;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Codarcea v. Romania, no. 31675/04, §§ 102-04, 2 June 2009.
12) Köpke cited above.
13) Bărbulescu, cited above, § 119.
14) Bărbulescu, cited above, § 120; Köpke, cited above.

약 제8조의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요건들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고용주가 직장 내에 비디오 감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고용관계의 특수성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직장 내 비디오 감시 조치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원들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i) 피고용인이 비디오 감시 조치가 선택되고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 고지받았는지 여부. 고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감시의 성격에 대하여 분명히 고지해야 하고, 시행 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ii) 고용주에 의한 감시의 범위와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정도. 관련하여, 감시되는 영역의 프라이버시 수준, 시간·공간상의 제한,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iii) 고용주 감시와 감시의 범위를 정당화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했는지 여부. 감시가 침해적일수록 더 중대한 정당화 사유가 요구된다.

iv) 덜 침해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감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는지 여부.

v) 피고용인에 대한 감시 결과. 고용주에 의한 감시의 결과의 사용과 그러한 결과가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vi) 특히 감시 작용이 침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피고용인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감시장치의 설치와 감시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피고용인들이나 직원대표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독립기구에 제출할 수 있는 신고, 이의제기 가능성 등.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과 이 사건 국내법원들에 의한 그 적용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위에 언급된 원칙들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의해 부과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

는 국가당국으로 하여금 상충하는 두 이익, 즉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고용주의 재산권 및 원활한 회사운영의 보장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하는 것이다.

스페인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피고용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정당성 심사),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해야 하고(필요성 심사), 각 사건의 상황에 비례적이어야 한다(엄격한 비례성 심사). 이러한 국내 법체계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청구인들도 그 적절성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청구인들은 고용주가 국내법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국내법원이 적절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원들이 취한 심사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법원들은 명시적으로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고용주의 권리와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내법원들이 상충하는 이익들을 형량할 때 위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법원은 비디오 감시장치의 설치가 정당한 이유, 즉 절도의 의혹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사람들을 찾아내고 징계조치를 취할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국내법원들은 감시의 범위와 침해의 정도를 심사하였고, 그 결과 감시되는 영역과 점원들이 한정되어 있었고 - 카메라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계산대 근처만을 찍었다 - 감시의 지속기간도 절도의혹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시는 가게의 모든 곳이 아니라 계산대 근처만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계산원으로 일하였던 3명의 청구인들은 근로시간 내내 제한 없이 CCTV 카메라에 찍혔고, 나머지 2명의 청구인들은 계산대 근처를 지날 때마다 카메라에 찍혔다.

또한 청구인들의 업무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손님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고려하여, 감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장실과 같은 사적인 곳은 강화된 보호를 받고, 비디오 감시는 완전히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일반 대중도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그 보호가 낮아질 것이다.

시간적 범위의 측면에서도, 고용주가 비디오 감시의 지속기간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10일 동안 지속되었고, 범인이 식별되자마자 감시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감시 기간은 그 자체로는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Köpke 사건의 경우 14일간의 지속기간도 불공정(disproportionate, 비례적이지 않은)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슈퍼마켓 매니저와 회사 측 법률대리인, 노조대표만이 녹화기록을 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건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심각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감시의 결과와 관련하여, 비디오 감시와 녹화는 물건의 분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밝혀내고 징계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었다. 국내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내법원이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고용주가 발견한 손실의 범위로 보아 절도가 많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되었고, 어느 직원에게든 고지하게 되면 감시의 목적 - 절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고 징계조치에 사용될 증거를 얻으려는 목적 - 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스페인 법률이나 관련 국제 기준들에 따르면 비디오 감시를 받는 사람들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사전 고지를 할 필요가 있음은 확립되어 있다. 투명성과 고지에 대한 권리는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큰 힘을 갖고 그러한 힘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고용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피감시자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비례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기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의 횡령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소한 의혹만으로 고용주의 비밀 비디오 감시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존재와 이 사건에서 파악된 손실의 범위는 중대한 정당화 사유에 이른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단지 한 사람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수명의 피고용인들의 합동 행위가 의심되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직장 내에 불신 풍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페인 국내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의 법체계와 이 사건 비디오 감시를 정당화하는 고려사항들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하건대, 스페인 당국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하의 적극적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은 없다고 판결한다.

3. 유럽인권협약 제6조 위반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녹화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한 청구인들은 고용주의 기망에 의하여 서명한 것이며 이는 공정한 심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유럽인권재판소 소재판부 판결 내용

소재판부는 2018년 1월 판결에서, 청구인들은 비디오 감시로 수집된 장면의 진위와 증거능력에 대하여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그러한 증거가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점에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위반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해치는 고용주 측의 강요가 없었다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판결에 불복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점에 있어서도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위반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판단

1) 일반적 원칙

유럽인권협약 제19조[15]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의무는 체약국들의 협약 준수를 보장하는 것에 그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원의 법률적용과 사실인정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류가 유럽인권협약 상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반의 여지가 없는 한, 이를 다룰 권한이 없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주로 국내법상의 문제이다.[16]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국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17]

따라서 특정 유형의 증거 - 예를 들어 국내법 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가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문제는 증거가 수집된 방식을 포함한 소송절차 전반이 공정하였는가이다. 유럽인권협약 제3조[18]의 고문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은 공정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언제나 심각한 문제를 야

15) 유럽인권협약 제19조 (재판소의 설립)
협약 및 의정서의 체약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이 재판소는 상설적으로 활동한다.

16) Schenk v. Switzerland, 12 July 1988, § 45, Series A no. 140; García Ruiz v. Spain [GC], no. 30544/96, § 28, ECHR 1999-I).

17) Bochan v. Ukraine (no. 2) [GC], no. 22251/08, § 61, ECHR 2015).

18) 유럽인권협약 제3조 (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기하는 반면, 제8조의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의 사용이 재판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만드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청구인에게 증거의 진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용을 반대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증거의 질도 살펴보아야 한다.

증거능력에 관한 이러한 원칙들은 형사법적 맥락에서 발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의 보장 수준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 국가는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보다 더 큰 재량을 갖는다-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가 된 민사소송의 공정성 심사에 이 원칙이 적용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① 증거의 일부로서의 비디오 감시 영상에 대한 판단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미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청구인들은 비디오 감시장치가 국내법이 규정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 비디오 감시로 수집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한 것이 소송의 공정성을 전체적으로 약화시켰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증거의 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한 번도 그 진위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국내법원들도 녹화물의 진실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영상물은 국내법원들의 판결의 근거가 된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다. 국내법원들은 청구인들의 진술, 슈퍼마켓 매니저와 회사 측 법률대리인과 직원대표 - 청구인들이 직원대표 앞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바 있음 - 의 증언, 녹화영상과 계산대 영수증을 비교한 전문가의 보고서도 고려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객관적인 증거인 계산대 영수증을 통해 상당수의 판매가 지불되지 않은 채로 취소된 것이 증명된다고 보았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합의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것을 신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비디오 감시로 수집된 영상 증거의 사용이 이 사건 소송의 공정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일부 청구인들이 서명한 합의서에 대한 판단

국내법원들은 합의서가 서명된 상황을 검토하였고, 서명 당시 노조대표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노조대표와의 면담 동안 그들의 행위를 인정했던 점, 해고된 다른 피고용인들은 고용주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강요의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내법원의 판결은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로서는 해당 청구인들이 서명한 합의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위반도 없었다고 판결한다.

4. 주문

위와 같은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는

(1) 전원일치로, 사망한 청구인의 법적상속인은 이 소송을 계속할 청구인적격을 갖는다고 판결한다.

(2) 전원일치로, 스페인 정부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다.

(3) 14대 3의 표결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한다.

(4) 전원일치로, 비디오 감시의 방법으로 수집된 녹화물 증거의 사용으로 인한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한다.

(5) 전원일치로, 합의서의 인정으로 인한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한다.

일부반대의견 (3인 의견)[19]

우리는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위반되지 않았다는 법정의견에 정중히 반대하며, 국내법원들이 청구인들과 고용주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하지 못하였다는 소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 사건은 증가하는 기술의 영향력과 지배력,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살아있는 법규로서 현대 기술의 영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비디오 감시의 수행과 전달을 극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잠재적인 침해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장치들을 갖춘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체계는 매우 중요해졌다. 이 사건에서 기존의 법체계는 오직 하나의 구체적인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감시장치의 설치와 이용에 대해 피고용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의 분석과 결정에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체계는 고용관계에서 중요한데 고용주는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큰 힘을 갖고, 그러한 힘의 남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비밀 비디오 감시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

또한 비밀 비디오 감시가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국내법원들의 평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절도범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덜 침해적인 수단에 근거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여부는 직장 내 비밀 비디오 감시라는 수단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법원들은 고용주가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

19) 재판관 Vincent A. De Gaetano, Ganna Yudkivska, Yonko Grozev의 의견.

안적인 방법이 가능했는지 고려했어야 했다. 고용주는 두 가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추가적인 절도를 막는 것으로, 이는 비디오 감시장치를 설치한다는 경고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둘째는 지난 수개월간 지속되어온 손실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는 것으로, 비디오 감시를 고지하는 것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절도는 형사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감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경찰을 찾을 수 있었고, 그랬어야 했다. 범죄를 밝힐 필요성이 - 과도하게 침해적인 수단이자 힘의 남용이 되는 비밀 비디오 감시를 포함한 - 사적 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의견은 사인 당사자들 간의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개인들이 법적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몫이다.

법정의견은 피고용인의 횡령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소한 의혹만으로 고용주의 비밀 비디오 감시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존재는 중대한 정당화 사유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절차적 보호장치 요건 없이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존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적 수사를 초래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사건에서 정당화 사유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심' 요건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보호장치이지만, 비밀적 특성을 갖는 전자 감시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장치들이 필요하다. 제3자에 의한 신뢰할만한 확인단계나 감시장치에 대한 정당화사유가 사후에 제공되는 것을 막는 보증 등의 요건이 요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감시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무제한적인 감시는 보다 무게를 두어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수집은 비례성 심사에 있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법정의견이 과소평가한 또 다른 요소는 감시가 피고용인들에게 미치는 결과이다. 법정의견은 비디오 감시와 녹화가 물건의 분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을 밝혀내고 징계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었다고 밝혔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해도 현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결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는 국내법원들과 법정의견 모두 고용주의 권리와 피고용인들의 권리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법정의견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고지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 없이, 직장 내 비밀 비디오 감시의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였다.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개인들이 법률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없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그러한 새로운 도전과 대면했을 때 불충분하게 보호된 채로 남겨둘 수 없다.